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983
------	------

2020. 11. 25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10월 16일, 채인묵 의원(찬성의원 9명)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】

-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(2020. 11. 25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채인묵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,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‘골목형상점가’로 규정하고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신설(안 제2조제2호의2 신설).

## 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일대를 ‘골목형상점가’로 지정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전통시장법”)이 개정(2020.8.12.시행)됨에 따라 이를 조례상의 지원대상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### 나. 전통시장·상점가 현황 및 지원내용

- 서울시는 “전통시장법”과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전통시장조례”)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 상권 활성화, 시설현대화, 청년상인육성,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음.
-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황을 살펴보면, 전체 349개소(점포수 6만개소, 상인수 12만명, 상인회 등록수 224개) 중 상점가는 61개소, 해당 점포수는 1만 907개, 상인수는 2만 4천여명임.

### <서울시 전통시장·상점가 현황>

구 분 <sup>1)</sup>	시 장 수	점 포 수	상 인 수	상인회 등록수(개)
계	349	60,005	121,428	224(63.7%)
등 록	135	29,639	53,505	51(37.5%)
인 정	118	16,890	39,418	112(94.9%)
상점가	61	10,907	24,728	60(98.3%)
무등록	35	2,569	3,777	1(2.8%)

- 전통시장·상점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, 이벤트 지원, 긴급보수지원, 주차환경개선 등의 사업분야에 586억원(2020년)을 지원하고 있음.

### <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현황>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지원사업내용	편성예산
<b>합계</b>		58,616
경영 현대화	전통시장 이벤트 지원	2,615
	상권르네상스 사업	425
	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	978
	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	96
	특성화시장 육성사업	1,913
	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	3,111
	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	684
	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사업'	2,454
시설 현대화	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	20,334
	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	20,668
	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	3,502
	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	347
	노후전선 정비사업	1,489

- 1) (등록 시장) 2006년 6월 이전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기타 대규모 점포 중 시장으로 등록된 곳
- (인정 시장) -도매업·소매업·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  
-도매업·소매업·용역업의 점포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(상가건물/복합형상가)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
- (상점가)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
- (무등록시장)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시·군·구에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임의로 분류한 시장

-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올해(1~9월) 서울시에서 5천 8백 60억원, 전국기준 3조 1천 8백억원 규모로 판매되었음.

#### 다. ‘골목형상점가’ 용어 신설(안제2조제2호의2)

- 상점가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2천㎡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를 말하며, 산업통상자원부는 도·소매 점포 비중이 50%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카페, 제과점, 음식점 등은 도·소매업이 아닌 용역점포로 분류되면서 상점가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.
- 이에 국회는 “전통시장법”을 개정해 ‘소상공인<sup>2)</sup>’이 운영하는 점포가 조례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된 구역을 ‘골목형상점가<sup>3)</sup>’로 지정하여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.

2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3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"이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〈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 상점가 지원 근거법령 및 인정기준〉

구 분		전통시장	상점가	골목형 상점가(안)
관련 법령		전통시장법	유통산업발전법	전통시장법
인정방법		사군구에서 인정 후 공고	별도 인정절차 없음	시·군·구의 조례로 지정
인정 기준	구역 면적	면적이 1,000㎡ 이상*인 구역으로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	구역면적 2,000㎡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	구역면적 2,000㎡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
	업종 및 점포수	도·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50개 이상	도·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30개 이상	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* * 점포수 기준(30개 이상)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<b>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</b>
	점포 비율	도·소매점포 50% 이상	도·소매점포 50% 이상 (산업부 업무처리 기준)	해당 없음
온누리상품권 사용여부		사용 가능	사용 가능	사용 가능

- 개정안은 “전통시장법” 에서 지원대상으로 신설된 ‘골목형상점가’ 의 개념을 조례에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 종사자 등 소상공인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입법의의의가 있음.
- ‘골목형상점가’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은 자치구 조례제정을 통해 가능하나 현재까지 제정된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한 건인 것으로 확인됨.
-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의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.
- 특히, 소상공인이 ‘골목형상점가’ 로 인정돼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출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- 다만, 개정안에서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개별 지원 사업에는 이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, 입법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원대상 사업에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이 요구됨.
- 한편, 서울시는 “전통시장조례” 제3조제1항4)에 따라 전통시장,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‘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’을 수립해야 함.
- 그런데, 2013년 첫 수립 이후 2016년과 2019년 계획수립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## V. 수정안 요지

##### 가. 수정이유

-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원대상 사업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‘골목형상점가’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함.

---

4)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'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'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

## 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아울러 ‘전통시장 등’ 으로 수정함(안 제2조제4호·제7호, 안 제11조).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조와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수정함(안 제3조제1항).

## 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## 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## 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83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1월 25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원대상 사업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‘골목형상점가’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아울러 ‘전통시장 등’으로 수정함(안 제2조제4호·제7호, 안 제11조).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조와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수정함(안 제3조제1항).

##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4호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 를 “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시장·상점가” 를 “전통시장 등” 으로 한다.

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법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 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치구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안 제11조제1항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와” 를 “전통시장 등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 를 “전통시장 등” 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란 <u>전통시장 및 상점가</u>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p> <p>5. ~ 6. (생략)</p> <p>7. “청년상인”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<u>시장·상점가</u>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전통시장 등의 활성화</u>를 위해 ‘<u>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</u>’ 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 (지원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란 <u>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</u>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p> <p>5. ~ 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7. “청년상인”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<u>전통시장 등</u>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법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</u>를 위한 <u>계획</u>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</p>

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의 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’ 및 자치구의 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’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1.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
2. ~ 7.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2. ~ 7. (현행과 같음)

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치구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11조(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1.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
2. ~ 7. (개정안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시장·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치구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와”를 “전통시장 등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등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란 <u>전통시장 및 상점가</u>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p> <p>5. ~ 6. (생 략)</p> <p>7. “청년상인”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<u>시장·상점가</u>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전통시장 등의 활성화</u>를 위해 ‘<u>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</u>’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<u>중</u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2의2. “<u>골목형상점가</u>”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<u>골목형상점가</u>를 말한다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란 <u>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</u>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“청년상인”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<u>전통시장 등</u>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법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</u>를 위한 <u>계획</u>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<u>법</u></p>

소기업청의 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 
를 위한 기본계획’ 및 자치구의 ‘시장  
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’ 을 반영  
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·운영)

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  
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  
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 
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1.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 
위한 사업
3. ~ 7. (생략)

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 
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법 제7  
조에 따른 자치구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  
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·운영)

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과 지역상권의  
활성을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(이  
하 “센터” 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 
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1.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 
사업
3. ~ 7. (현행과 같음)